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8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김영호·박용갑·문대림

김동아 • 한민수 • 강선우

문정복 · 김현정 · 신정훈

조계원 · 이병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 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자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1조제1항제4호 중 "제9호"를 "제9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한 폭언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복지시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도로교통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아동복지시설,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
	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폭
	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
	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제71조(벌칙) ①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4. <u>제9호 또는 제12호</u>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